

일본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일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민유림) 입목벌채 허가통지서, 벌채신고 수리증,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벌채신고 수리증	첨부1~4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6.12월 기준 산림 39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SGEC 인증서 ('16.12월 기준 산림 156만ha가 SGEC 인증을 받음)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일본은 '17.5.20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동 법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목재사업자는 목재합법성 관련서류를 수집·확인하여야 하며, 동 정보는 목재 관련사업자 간 전달됨)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유림) 임산물 매매계약서 [임야청]	

[첨부1. 벌채 및 벌채 후 조림계획 신고서]

証明書様式 1-2

※伐採届けの写しを活用した証明

4 規則第7条第1項の届出書の様式 (森林所有書段階の証明書の例)


証明書の引渡先を記載して下さい。

杉山太郎 殿

市町村長 殿

伐採及び伐採後の造林の届出書

年 月 日



接受
平成 年 月 日
OO町

住所

届出人 氏名 [法人にあつては、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 印

次のとおり森林の立木を伐採したいので、森林法第10条の8第1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ます。

1 森林の所在場所

市	町	大字	字	地番
郡	村			

2 伐採の計画

伐採面積				ha
伐採方法	主伐(皆伐・択伐)・間伐	伐採率		
伐採樹種				
伐採齢				
伐採の期間				

3 伐採後の造林の計画

(1) 造林の方法別の造林面積等の計画

造林面積 (A+B+C+D)	ha
人工造林による面積 (A+B)	ha
植栽による面積 (A)	ha
人工播種による面積 (B)	ha
天然更新による面積 (C+D)	ha
ぼう芽更新による面積 (C)	ha
天然更新補助作業の有無	地表処理・刈出し・植込み・その他()・なし
天然下種更新による面積 (D)	ha
天然更新補助作業の有無	地表処理・刈出し・植込み・その他()・なし

(2) 造林の方法別の造林の計画

	造林の期間	造林樹種	樹種別の 造林面積	樹種別の 植栽本数
人工造林 (植栽・人工播種)			ha	本
天然更新 (ぼう芽更新・天然下種更新)				
5年後において適確な更新 がなされない場合				

(3) 伐採後において森林以外の用途に供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のその用途

--

4 備考

--

注意事項

- 1 伐採する森林の所在する市町村ごとに提出すること。
- 2 伐採する者が伐採後の造林に係る権原を有しない場合にあつては、伐採する者と当該権原を有する者が連名で提出すること。
- 3 氏名を白書する場合においては、押印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 4 森林の所在場所ごとに記載すること。
- 5 面積は、小数第2位まで記載し、第3位を四捨五入すること。
- 6 樹種は、すぎ、ひのき、まつ（あかまつ及びくろまつをいう。）、からまつ、えぞまつ、とどまつその他の針葉樹及びぶな、くぬぎその他の広葉樹の別に区分して記載すること。
- 7 伐採方法欄には、皆伐、択伐又は間伐の別を記載し、伐採率欄には、立木材積による伐採率を記載すること。
- 8 伐採年齢欄には、伐採する森林が異齡林の場合においては、伐採する立木のうち最も多いものの年齢を記載し、最も年齢の低いものの年齢と最も年齢の高いものの年齢とを「(○～○)」のように記載すること。
- 9 伐採の期間が1年を超える場合においては、2の伐採の計画を年次別に記載すること。
- 10 造林面積欄には、伐採後において森林以外の用途に供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のその用途を記載した場合を除き、主伐に係る伐採面積と一致するよう記載すること。
- 11 植栽による面積欄には、市町村森林整備計画において植栽によらなければ適確な更新が困難な森林として定められている伐採跡地の面積を下回らないよう記載すること。
- 12 天然更新補助作業の有無欄には、当該作業を行う場合には、地表処理、刈出し、植込みなどの作業の種類を記載すること。
- 13 造林樹種欄及び樹種別の造林面積欄には、複数の樹種を造林する場合には、造林する樹種ごとに複数の行に分けて記載すること。
- 14 樹種別の植栽本数欄には、植栽する樹種ごとに複数の行に分けて記載すること。
- 15 5年後において適確な更新がなされない場合欄には、造林の方法を天然更新による場合（伐採後において森林以外の用途に供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のその用途を記載した場合であつて、伐採の終了した日から5年後において当該用途に供されていないときを含む。）における造林の期間、造林樹種、樹種別の造林面積及び樹種別の植栽本数を記載すること。
- 16 伐採後において森林以外の用途に供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のその用途欄には、伐採後5年以内において当該伐採跡地が森林以外の用途に供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のみ記載すること。

[첨부2. 산림경영계획 인정서]

証明書様式 1-3

※森林施業計画認定書の写しを活用した証明

別紙2

森林経営計画の認定の請求をした者に対する認定書の様式

(森林所有者段階の証明書の例)

杉山 太郎 殿

証明書の引渡先を記載して下さい。

森林経営計画認定書

認定番号

年 月 日

殿

市町村長(都道府県知事、農林水産大臣) 氏名

印

森林法第11条第1項(第12条第1項、第12条第2項)の規定により、平成 年 月 日に請求のあった森林経営計画については、森林法施行規則第8条の20第 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ものであり、これを適当であると認定する。

- (注) 1. 認定番号は認定年度における通し番号とし、当該年度を附して、24-1のように記載する。
2. 変更後の認定番号について、当該森林経営計画の変更回数と、変更年度を(注)1の認定番号の次に(変1-25)のように記載する。
3. 変更の場合にあつては表題の次に(変更)と記載し、本文における当該適用条項以外の条項は削除する。

森林施業計画の概要(伐採箇所)

- ・森林の所在地
- ・樹種
- ・伐採面積
- ・伐採材積

伐採箇所に係る情報を記述して下さい。また、これに代えて、森林施業計画書の該当箇所の写しを添付することもできます。

[첨부3. 보안림 내 입목 벌채 허가 결정 통지서]

証明書様式 1-1

※保安林伐採許可書の写しを活用した証明 (森林所有者段階の証明書の例)

証明書の引渡先を記載して下さい。

保安林内立木伐採許可決定通知書

杉山 太郎 殿
 山田 一部 殿 第 号

年 月 日付けで申請のあった立木の伐採については、森林法第 34 条第 1 項の規定に基づき、下記により許可する。

年 月 日 〇〇県知事 印

記

1 保安林の指定の目的

森林の所在場所					伐採の方法別	伐採する立木の樹種及び年齢	伐採面積及び伐採立木材積 ヘクタール (m ²)	備考
市郡	町村	大字	字	地番				

2 許可の条件

(1) 伐採期間は、年 月 日から 年 月 日までとする。ただし、やむをえない事由によりこの期間に伐採を終了できないときは、60 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期間の延長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2) 搬出期間、搬出方法等

(教示)

1 この許可について不服がある場合には、……………。

2 この許可については、……………。

3 不服の理由が、……………。

備考 許可が、森林法第 25 条第 1 項第 4 号から第 11 号までに掲げる目的を達成するための指定に係る民有林に関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教示文中「農林水産大臣」とあるのは「〇〇県知事」と、「審査請求」とあるのは「異議申立て」と、「裁決」とあるのは「決定」とする。

別記3
(証明書の様式(例))

番号
平成 年 月 日

木材・木材製品の合法性・持続可能性証明書

殿

事業者の所在地：
事業者の名称：
代表者の氏名：
団体認定番号：

下記の物件は、持続可能な森林経営を行っている森林から合法的に伐採された木材のみを
原材料としていることを証明します。

記

- 1 樹種：
- 2 品目(注③)：
- 3 数量(注④)：

(注)

- ①本様式による証明書の作成に代えて、既存の納品書等に上記の情報(団体認定番号、合法木材
である等)を追加記載することで証明書とすることも可能です。
- ②上記は合法性、持続可能性を証明する場合の例であり、合法性のみを証明する場合は持続可能
性に係る記述を削除して下さい。
- ③丸太、製材、合板、集成材等を記述して下さい。
- ④商取引上の単位(m³、本、kg、枚など)にて記述して下さい。

[첨부5. 청구서]

証明書様式 3-1

別添 1

※納品書を活用した証明

(加工・流通業者段階の証明書の例)

納品書 (出荷伝票)

番号2005010001
平成 年 月 日

○○○○木材(株) 殿
住所: ○○市○○字○○

○○○○製材所
認定工場番号: □□□□□□□□□□1号
氏名: 山田一郎 印
住所: ○○県○○町○○1丁目2番地
電話: XXX-YYY-ZZZ

発地 (出荷場所) ○○○○製材所 ○○工場
着地 (納入場所) ○○○○木材 ○○製品市場

樹種	品等	寸法	数量	単材積	材積	単価	金額	備考

上記の製材品は持続可能な森林経営が営まれている森林から
産出され合法的に伐採された木材のみを原料としています。

(注) 持続可能性を証明する場合には、持続可能性に係る記述を付加して下さい。

証明に必要な事項
(認定番号)を記
載して下さい。

証明に必要な事項 (合法木材で
あること等) を記載して下さい。

[첨부1. 벌채 및 벌채 후 조림계획 신고서]

증명서 양식 1-2

※벌채신고서 사본을 이용한 증명

4 규칙 제7조 제1항 신고서 양식

(산림소유서 단계의 증명서 예시)

증명서 인도처를
기입 바랍니다.

벌채 및 벌채 후의 조림계획 신고서

년 월 일

스기야마 타로 귀하

시정촌¹⁾장 귀하

접수
년 월 일
OO정²⁾

주소
신고인이름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인

아래와 같이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산림법 제10조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산림 소재지

시	정	대자	자	지번
군	촌			

2 벌채 계획

벌채면적				ha
벌채 방법	주벌(개벌/택벌) 간벌	벌채율		%
벌채수종				
벌채령				
벌채 기간				

3. 벌채 후 조림계획

(1) 조림 방법별 조림면적 등 계산

조림면적(A+B+C+D)		ha
인공조림에 의한 면적(A+B)		ha
식재에 의한 면적(A)		ha
인공과중에 의한 면적(B)		ha
천연갱신에 의한 면적(C+D)		ha
왜림갱신에 의한 면적(C)		ha
천연갱신 보조작업 유무	지표처리/베어내기/심기 기타 () / 없음	
천연 하종갱신에 의한 면적(D)		ha
천연갱신 보조작업 유무	지표처리/베어내기/심기 기타 () / 없음	

1) 기초자치단체
2) 지자체 행정구역

(2) 조립 방법별 조립계획

	조립기간	조립수종	수종별 조립면적	수종별 식재 그루 수
인공조립 (식재/인공파종)			ha	그루
천연갱신 (왜림갱신/천연하종갱신)				
5년 후, 적절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벌채 후에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될 경우, 그 용도

--

4. 비고

--

주의사항

1. 벌채하는 산림의 소재지에 따라서 시정촌(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할 것.
2. 벌채하는 자가 벌채 후의 조립계획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벌채하는 자와 해당 권한을 가지는 자가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것.
3.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4. 산림의 소재지별로 기재할 것.
5. 면적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는 소수점 둘째 자리수에 반올림한다.
6. 수종은 삼목, 노송나무, 소나무(적송 및 흑송을 말함), 낙엽송,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기타 침엽수 및 너도밤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광엽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7. 벌채방법 칸에는 개별, 택별 또는 간벌별로 기재하고, 벌채율 칸에는 입목 재적에 의한 벌채율을 기재할 것.
8. 벌채령 칸에는 벌채하는 산림이 서로 연령이 다른 경우, 벌채하는 입목 중 가장 많은 것의 연령을 기재하고, 가장 연령이 낮은 것의 연령과 가장 연령이 많은 것의 연령을 “(O~O)” 과 같이 기재할 것.
9. 벌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의 벌채 계획을 연차별로 기재할 것.
10. 조립면적 칸에는 벌채 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 그 용도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벌과 관련된 벌채면적과 일치되도록 기재할 것.
11. 식재에 의한 면적 칸에는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서 식재에 의하지 않으면 적절한 갱신을 하기 힘든 산림으로 규정된 벌채적지의 면적보다도 많게 기재할 것.
12. 천연갱신보조작업 유무 칸에는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표처리/베어내기/심기 등 작업의 종류를 기재할 것.
13. 조립수종 칸 및 수종별 조립면적 칸에는 복수의 수종을 조립하는 경우, 조립하는 수종별로 복수의 행으로 나누어 기재할 것.
14. 수종별 식재 그루 수 칸에는 식재하는 수종별로 복수의 행으로 나누어 기재할 것.
15. 5년 후, 적절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칸에는 조립방법을 천연갱신에 의한 경우(벌채 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의 해당 용도를 기재한 경우이면서, 벌채 종료일부터 5년 후에 해당 용도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함)의 조립 기간, 조립 수종, 수종별 조립면적 및 수종별 식재 그루 수를 기재할 것.
16. 벌채 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의 그 용도 칸에는 벌채 후 5년 이내에 해당 벌채적지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재할 것.

[첨부2. 산림경영계획 인정서]

증명서 양식 1-3

※산림사업계획인정서사본을 활용한 증명
별지 2

산림경영계획 인정을 청구한 자에 대한 인정서 양식 (산림소유자 단계의 증명서 예시)

스기야마 타로 귀하

증명서의 인도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획 인정서

인정 번호

년 월 일

귀하

시정촌장(도도부현 지사, 농림수산성 대신) 이름 인

산림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에 청구한
산림경영계획에 관해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8조 20 제 호에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며, 이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 (주의)1. 인정번호는 인정년도의 일련번호로 하며, 해당 연도를 넣고 24-1과 같이 기재한다.
2. 변경 후의 인정번호에 대해서, 해당 산림경영계획의 변경 횟수와 변경년도를 (주의)
1의 인정번호 다음에(변 1-25)와 같이 기재한다.
3.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제 다음에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서의 해당 적용조항
이외의 조항은 삭제한다.

산림사업계획 개요(별채 부분)

- 산림의 소재지
- 수종
- 별채 면적
- 별채 재적

별채 개소에 관련된 정보를 기입
하십시오. 또한, 이를 대신하여,
산림사업계획서의 해당 부분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3. 보안림 내 입목 벌채 허가 결정 통지서]

증명서 양식 1-1

※보안림 벌채 허가서 사본을 이용한 증명

(산림소유자 단계의 증명서 예시)

보안림 내 입목 벌채 허가 결정 통지서

증명서의 인도처를 스기야마 타로 귀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야마다 이치로 귀하

제 호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입목의 벌채에 대하여 산림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한다.

년 월 일 OO현 지사 인

아 래

1. 보안림 지정 목적

산림 소재지					벌채 방법별	벌채하는 입목의 수종 및 연령	벌채면적 및 벌채입목 재적 헥타르(m ²)	비고
시군	정촌	대자	자	지번				

2. 허가 조건

(1) 벌채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해당 기간에 벌채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반출기간, 반출방법 등

(교시)

- 1 이 허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 2 이 허가에 대해서는
- 3 불복 사유가

비고 허가가 산림법 제2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정과 관련한 민유림에 관련된 것인 경우, 교시문 중 ‘농림수산성 대신’ 이라고 되
 어 있는 것은 ‘OO현 지사’ 로, ‘심사청구’ 라 되어 있는 것은 ‘이의신청’ 으로,
 ‘재결’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정’ 으로 한다.

별기 3

(증명서 양식(예))

번호

년 월 일

목재 및 복재제품의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 증명서

귀하

사업자 소재지 :

사업자 명칭 :

대표자 성함 :

단체 인정번호 :

아래 물건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산림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을 원재료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 래

1. 수종 :
2. 품목(주의③) :
3. 수량(주의④) :

(주의)

- ① 본 양식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기존의 납품서 등에 상기 정보(단체 인정번호, 합법목재인 점 등)를 추가 기재하여 증명서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 ② 상기는 합법성,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경우의 예시이며, 합법성만을 증명하는 경우는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기재사항을 삭제하십시오.
- ③ 통나무, 제재, 합판, 집성재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④ 상거래 단위(㎥, 그루, kg, 매 등)로 기재하십시오.

[첨부5. 청구서]

증명서 양식 3-1

별첨 1

※납품서를 이용한 증명

(가공, 유통업자 단계의 증명서 예시)

번호 2005010001

년 월 일

납품서(출하전표)

0000목재(주) 귀하
주소 : 00시00자00

0000제작소
인정공장번호 : □□현목련제0001호
이름 : 야마다 이치로 인
주소 : 00현00정00초메 2번지
전화번호 : XXX-YYY-ZZZ

증명에 필
요한 사항
(인정번호)
를 기입하
십시오.

출발지(출하장소) 0000제재소 00공장
도착지(납품장소)0000목재 00제품시장

수종	품등	치수	수량	단 재적	재적	단가	금액	비고

상기 제재품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운영되고 있는 산림에서
산출되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을 원료로 합니다.

증명에 필요한 사항 (합법목재
라는 사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주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일본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산림을 소유 형태별로 분류하면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유림은 공유림(도도부 현, 시·정·촌 소유)과 사유림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분류별 면적 비율은 국유림이 31%, 공유림이 12%, 사유림이 58% (평성 24 (2012)년 3월 31일 현재)이다.

- 일본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 일본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일본에서는 산림 경영을 포함한 산림·임업 시책은 임야청이 소관하고 있다.

-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일본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일본은 산림법에서 「산림 계획 제도」 및 「보안림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숲의 벌목에 대한 도도부 현, 시·정·촌에서 허가를 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은 “국유림의 관리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관리 경영이 실시되는 곳이다.

- 일본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1) 산림 계획 제도

숲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적절한 숲의 취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산림법상 산림계획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민유림에서 시·정·촌이 정하는 「시·정·촌 산림 정비 계획」에 따른 산림 시업 및 보호를 확보 해 나가기 위해 이 법에서 「벌채 및 벌채 후 조림계획의 신고 제도」, 「산림 경영 계획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① 벌채 및 벌채 후 조림계획의 신고 제도

산림 소유자 등이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사전에 벌채 및 벌채 후 조림 계획을 신고 할 의무가 있다 (첨부 1). 「시·정·촌이 산림 정비 계획」에 적합한 시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정·촌장은 변경 또는 준수를 명할 수 있다. 무단으로 벌채 한 경우 등에는 시·정·촌장은 벌목 중단 및 조림을 명할 수 있다.

② 산림경영계획 제도

산림 경영 계획은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소유자로부터 산림 경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신이 숲의 경영을 하고 일체적인 정리 된 숲을 대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산림사업 및 보호 등의 계획이다.

「시·정·촌 산림 정비 계획」을 준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정·촌장 등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붙임 2). 산림 경영 계획에 따른 벌채 등의 신고는 사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보안림 제도

보안림 제도는 수원의 함양, 재해의 방지, 생활 환경의 보전 등의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이러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숲을 「보안림」로 지정하여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규제로 인해 그 숲의 적절한 보전과 산림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안림의 제한은 주로 입목의 벌채 제한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제한이 있으며, 보안림의 지정시 지정 사업 요건 (보안림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 사업 방법 (벌채 방법 · 한도 벌채 후 재배 방법, 기간 및 수종))이 결정된다. 입목의 벌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며, 지정 사업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된다 (첨부 3).

(3) 국유림 관리 경영 구조

국유림은 「국유 임야 관리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이외의 토지를 포함한 국유 임야 관리 경영 방침에 대해 5년을 1기로 산림 계획 구역마다 산림 관리 국장이 “지역 관리 사업 계획”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 기간 내에 할 구체적인 벌채와 조림의 위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산림 관리 국장이 정하는 「국유 임야 사업 실시 계획」에 정해져있다.

국유림에서의 벌채는 이러한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임산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벌채에 따른 보안림 제도 등에 따른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목이나 통나무 매매 계약서에서 합법적인 것인지 명기되어 있다

이상의 점에서 민유림은 보안림의 입목의 벌채의 허가 통지, 보안림 이외에서는 벌채 및 벌채 후의 조림의 신고서 및 산림 경영 계획에 따른 벌채 등의 신고서 등이 합법성의 증명의 기초 자료가 된다. 국유림 내용은 “매매 계약서“합법성 증명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한 민유림은 보안림 제도와 산림 계획 제도의 적용 외인 숲도 있다. 그 숲은 숲 소유자와 체결하며, “매매 계약서“는 합법성 증명의 기초 자료가 된다 .

-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임야 청에서 담당 창구는 목재이용과 이다.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일본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일본에서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일본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2016 년 5 월 20 일에 「합법적 벌목 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클린 우드 법)이 성립되어 2017 년 5 월 20 일에 시행되었다.

클린 우드 법은 “목재 관련 사업자“로 나무 등의 제조·가공·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와 목재를 사용하여 건축·건설하는 사업자,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자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목재 등은 다음과 같다.

- 목재

“통나무“, “판재와 각목“, “단판과 합판”, 「합판, 단판 적층재 및 집성재」, 「목재 펄릿, 칩 및 조각“

- 가구·종이 등의 물품

1. 의자, 책상, 선반, 수납장, 파티션, 옷걸이, 우산 꽃이, 게시판, 칠판, 화이트 보드 및 침대 프레임 중 소재가 주로 목재인 것
2. 목재 펄프
3. 복사용지, 인쇄용지, 잉크젯 컬러 프린터 용지, 표면처리 되지 않은 인쇄용지, 표면처리 된 인쇄용지, 티슈 및 화장지 중 목재 펄프를 사용한 것
4. 바닥재 중 소재가 목재인 것
5. 목질계 시멘트 판
6. 사이딩 보드 중 목재를 사용한 것
7. 이상의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의 중간 공정에서 만들어진 것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목재 관련 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목재 관련 사업자의 합법적 벌목 목재 등의 이용의 확보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省令“(판단 기준 성령)에 따라 목재 제품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 합법성을 확인 할 책임으로 관련 사업자는 「제 1 종 목재 관련 사업자」와 「제 2 종 목재 관련 사업자」로 나누어진다. 제 1 종 목재 관련 사업자는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목재를 공급하는 자이다. 제 2 종 목재 관련 사업자는 제 1 종 목재 관련 사업자 이외의 목재 관련 사업자이다. 수출을 하는 사업자는 제 2 종 목재 관련 사업자가 된다. (단, 일본에서 벌채 된 목재를 취급하는 제 1 종 목재 관련 사업과 수출을 할 제 2 종 목재 관련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자도 존재한다.)

“판단 기준 성령“은 제 1 종 목재 관련 사업자는 취급 목재 등의 수종 이름, 벌채업자, 수량, 공급 업체 등의 일반적인 정보와 법령 준수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벌채 된 목재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산림법에 근거 벌채 신고 및 산림 인증의 인증서 등이다. 이 단계에서 합법성의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 적법성 확인이 된 나무는 합법성의 확인에 이르지 못한 나무와 분리하여 관리되고 합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 한 서류와 함께 시장에서 유통된다.

제 2 종 목재 관련 사업자는 구입처에서 제공 한 서류를 확인하고 합법성이 확인된 목재 등과 합법성의 확인에 이르지 못한 목재 등을 분리 관리하여 판매처에 양도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목재 관련 사업자는 “등록 목재 관련 사업자”로서 국가에 등록 된 등록 실시 기관에 등록 할 수 있다. “등록 목재 관련 사업자”는 사업자로서의 행동 강령에 합법적 벌목 목재 등의 이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합법적 벌목 목재 등의 이용을 제대로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책임자의 배치 등 체제 준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이 등록 목재 관련 사업자

가 첨부하는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 한 서류 (합법적 인증서)은 신뢰성이 높은 것이다.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2006 년 2 월에 임야청이 “목재 및 목재제품의 적법성과 지속 가능성의 검증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목재 및 목재제품의 적법성 지속 가능성의 증명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합법적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위의 클린 우드 법에서도 합법성의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산림 인증 제도 및 CoC 인증 제도를 활용한 인증 방법

산림 인증 (FSC, PEFC, SGEC (PEFC와 상호 인증))을 취득한 산림에서 생산 된 목재 및 목재제품 CoC 인증과 연결하고 인증 마크가 날인 된 목재·목재제품, 전표 등으로 증명.

平成 28 (2016) 년 12 월 현재 일본의 산림 인증 면적은 FSC가 39만ha, SGEC이 156만ha이다.

② 산림·임업·목재산업 가입 인증을 받고 사업자가 실시하는 시험 방법

산림·임업·목재산업 가입이 합법성, 지속 가능성 증명할 수 목재와 목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만든 다음, 합법성, 지속 가능성의 입증 된 목재와 목재제품의 공급에 종사하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활동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인증 받은 업체들은 최근 관련 업체의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관리하는 목재와 목재제품의 합법성·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분별 관리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서)를 교부하고, 각각 관련된 각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교부함으로써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연쇄적으로 증명한다.

③ 개별 기업들의 자체 노력 따른 증명 방법

규모가 큰 기업들은 산림의 벌채 단계에서 납품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경로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증명한다.

등록된 목재 관련 사업자도 아니고, 합법성 증명 지침에 의한 합법성 증명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하는 목재에 관한 벌채허가서 또는 신고 후 유통 단계의 합법성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견적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합법성 증명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수출되는 목재·목재제품은 다음의 서류에 의해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등록 목재 관련 사업자의 경우는 클린 우드 법률에 따라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합법적 증명 서류 (작성 중)
- ② 등록 목재 관련 사업자는 아니지만 합법적 목재 지침에 따라 합법성 증명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합법적 목재 지침에 근거한 합법적 증명 서류 (첨부 3)
- ③ 등록 목재 관련 사업자가 아닌 합법성 증명 지침에 의한 합법성을 증명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합법성 확인에 사용 된 모든 자료 (첨부 1 ~ 4 등)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일본의 합법성 증명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기타

-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일본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붙임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별
채 허가서, 가공 기업 자격, 수출 허가증,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eneral Aspects

■森林の一般的な状況について

(回答)

日本の森林を所有形態別に分類すると、国有林と民有林に大別でき、民有林は、公有林（都道府県、市町村が所有）と私有林に分類できる。分類ごとの面積割合は、国有林が31%、公有林が12%、私有林が58%（平成24（2012）年3月31日現在）である。

日本では、森林管理を含めた森林・林業の施策について林野庁が所管している。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ses and Permits

■伐採許可と許可証について

(回答)

1. 日本では、森林法において「森林計画制度」及び「保安林制度」が定められている。これらの制度の中において、森林の伐採に関する都道府県、市町村への許可、届出が取り決められている。また、国有林においては、国有林野の管理経営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国有林の管理経営が実施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

(1) 森林計画制度

森林は、長期的な視点に立った計画的かつ適切な森林の取扱いを推進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から、森林法において森林計画制度を定めている。

民有林においては、市町村が定める「市町村森林整備計画」に従った森林の施業及び保護を確保していくために、同法において、「伐採及び伐採後の造林の届出制度」、「森林経営計画制度」が講じられている。

① 伐採および伐採後の造林の届出制度

森林所有者などが森林の立木を伐採する場合、事前に伐採及び伐採後の造林の計画の届出を行うこと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添付1）。「市町村森林整備計画」に適合した施業が行われ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時は、市町村長は変更や遵守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無届で伐採した場合等には、市町村長が伐採の中止及び造林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回答）添付ファイルに該当条文を記載しています。

② 森林経営計画制度

森林経営計画は、森林所有者又は森林所有者から森林の経営の委託を受けた者が、自らが森林の経営を行う一体的なまとまりのある森林を対象として、単独又は共同で自発的に作成する森林の施業及び保護などの計画である。

「市町村森林整備計画」に適合し、一定の基準を満たす場合、市町村長等による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添付2）。森林経営計画に係る伐採等の届出は事後に提出することとなっている。

（回答）森林経営計画の認定者から届出をしたことの証明を求められた場合に、市町村の判断により、（受理印のついた届出の写しをつけて）経営計画に基づく届出である旨を証明することが出来ます。

認定者以外の者が証明する書類を求めることや、流通経路が複雑である場合に、流通経路をさかのぼって当該書類を手に入れて輸出業者に渡すことは困難だと考えられる。

（２）保安林制度

保安林制度は、水源のかん養、災害の防備、生活環境の保全等の公共目的を達成するため、特にこれらの機能を発揮する必要がある森林を「保安林」として指定し、立木の伐採、土地の形質変更行為等の規制により、その森林の適切な保全と森林施業を確保するものである。

保安林における制限としては、主に立木の伐採の制限と土地の形質変更等の制限があり、保安林の指定の際に指定施業要件（保安林の指定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森林施業の方法（伐採の方法・限度、伐採後の植栽の方法、期間及び樹種））が定められる。立木の伐採に当たっては、原則、許可が必要であり、指定施業要件に適合する場合に許可される（添付３）。

（３）国有林の管理経営の仕組み

国有林では、「国有林野の管理経営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森林ならびに森林以外の土地も含めた国有林野の管理経営の方針について、5年を1期として森林計画区ごとに森林管理局長が「地域管理経営計画」を定めている。また、同計画の期間内に行う具体的な伐採や造林の箇所、方法等については同じく森林管理局長の定める「国有林野施業実施計画」に定められている。

国有林から伐採される木材については、これらの計画に基づいたものであるとともに、林産物の売買契約を締結する前に、伐採に係る保安林制度等に基づく手続きが

適切に行われており、立木や丸太の売買契約書において合法であることが明記されている。

2. 以上のことから、民有林については、保安林の立木の伐採における許可の通知、保安林以外では伐採及び伐採後の造林の届出書や森林経営計画に係る伐採等の届出書などが合法性の証明の基礎資料となる。国有林については、「**売買契約書**」が合法性の証明の基礎資料となる。

なお、民有林については、保安林制度や森林計画制度の適用外である森林もあり、それらの森林については、森林所有者と交わした「売買契約書」が合法性の証明の基礎資料となる。

(回答) 国と契約相手方との契約になるので、それ以外の者に国として契約書若しくは複写した契約書を提示することはない。このため、流通経路が複雑である場合には、さかのぼって売買契約書のコピーまで輸出業者に渡すことは困難だと考えられる。

3. 林野庁での担当窓口は、木材利用課である。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合法伐採証明に関するその他の点について

(回答)

1. 日本では、2016年5月20日に「合法伐採木材等の流通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クリーンウッド法)が成立し、2017年5月20日に施行された。

クリーンウッド法では、「木材関連事業者」として、木材等の製造、加工、輸入、輸出又は販売をする事業者、木材を使用して建築・建設を行う事業者、木質バイオマス発電事業者までを対象としている。また、対象とする木材等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 木材

「丸太」、「ひき板及び角材」、「単板及び突き板」、「合板、単板積層材及び集成材」、「木質ペレット、チップ及び小片」

・ 家具・紙等の物品

- 1 椅子、机、棚、収納用じゅう器、ローパーティション、コートハンガー、傘立て、掲示板、黒板、ホワイトボード及びベッドフレームのうち、部材に主として木材を使用したもの
- 2 木材パルプ
- 3 コピー用紙、フォーム用紙、インクジェットカラープリンター用塗工紙、塗工されていない印刷用紙、塗工されている印刷用紙、ティッシュペーパー及びトイレットペーパーのうち、木材パルプを使用したもの
- 4 フローリングのうち、基材に木材を使用したもの
- 5 木質系セメント板
- 6 サイディングボードのうち、木材を使用したもの

7 以上の物品の製造又は加工の中間工程で造られたもの

木材関連事業者は、国が定める「木材関連事業者の合法伐採木材等の利用の確保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判断の基準となる省令」（判断基準省令）に基づき、取り扱う木材・木材製品について、合法性の確認を行うこととなっている。

この合法性の確認を行う責任の重さにより、木材関連事業者は「第1種木材関連事業者」と「第2種木材関連事業者」に分けている。第1種木材関連事業者は、国内の市場に最初に木材を供給する者である。第2種木材関連事業者は、第1種木材関連事業者以外の木材関連事業者である。輸出を行う事業者は、第2種木材関連事業者となる。（ただし、日本で伐採された木材を取り扱う第1種木材関連事業と、輸出を行う第2種木材関連事業を同時に行う事業者も存在する。）

「判断基準省令」では、第1種木材関連事業者においては、取り扱う木材等の樹種名、伐採国、数量、供給元等の一般的な情報と、法令の遵守に関する書類を確認することとしている。日本で伐採された木材の合法性の確認を行うための書類は、森林法に基づく伐採届や森林認証の証明書等となる。この段階で合法性の判断がつかない場合は、それ以上の情報を収集するなどの追加的な取組を行うこととしている。

このような判断の結果、合法性が確認された木材と合法性の確認に至らなかった木材が生ずることになり、合法性の確認がされた木材は、合法性の確認に至らなかった木材と分別管理され、合法性の確認ができた旨を記載した書類とともに、市場で流通することとなる。

第2種木材関連事業者は、購入元から提供された書類を確認し、合法性が確認された木材等と合法性の確認に至らなかった木材等を分別管理して、販売先に譲り渡すこととなる。

また、これらの取組を適切かつ確実に実施する木材関連事業者は、「登録木材関連事業者」として、国に登録された登録実施機関に登録できることとなっている。「登録木材関連事業者」は、事業者としての行動規範に、合法伐採木材等の利用について

の意思を定めるとともに、合法伐採木材等の利用を適切に行っていくために必要な責任者の設置等の体制の整備を行っている事業者である。この登録木材関連事業者が添付する合法性の確認ができた旨を記載した書類（合法証明書）については、信頼性が高いものである。

2. 次に、日本では、平成18年2月に林野庁が「木材・木材製品の合法性、持続可能性の証明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を定め、木材・木材製品の合法性、持続可能性の証明方法として、以下の3つの方法により、合法証明書を発行している。

これらの取組は、上記のクリーンウッド法においても、合法性の確認の手段として、活用できるとしている。

①森林認証制度及びC o C 認証制度を活用した証明方法

森林認証（F S C、P E F C、S G E C（P E F Cと相互認証））を取得した森林から生産された木材・木材製品がC o C 認証と連結し、認証マークが押印された木材・木材製品、伝票等をもって証明する。

平成28（2016）年12月現在の日本における森林認証の面積は、F S Cが39万ha、S G E Cが156万haとなっている。

②森林・林業・木材産業関係団体の認定を得て事業者が行う証明方法

森林・林業・木材産業関係団体が、合法性、持続可能性の証明できた木材・木材製品を供給するための自主的行動規範を作成した上で、合法性、持続可能性の証明された木材・木材製品の供給に取り組む当該団体の構成員について、その取組が適切である旨の認定等を行う。

認定を得た事業者は、直近の納入先の関係事業者に対して、その納入する木材・木材製品が合法性・持続可能性を証明されたものであり、かつ、分別管理されてい

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証明書）を交付し、それぞれの納入ごとに証明書の交付を繰り返して合法性、持続可能性の証明の連鎖を形成することにより証明を行う。

③個別企業等の独自の取組による証明方法

規模の大きな企業等が、独自の取組によって森林の伐採段階から納入段階等に至るまでの流通経路等を把握した上で証明を行う。

3. さらに、登録木材関連事業者でもなく、合法性証明ガイドラインによる合法性証明を行わない事業者にとっては、取り扱う木材の伐採に係る許可書や届出、その後の流通段階における合法性が連鎖されていることが把握できる納品書等を全て提示することにより、合法性の証明を行うことができる。

4. 以上のことから、日本から輸出される木材・木材製品については、以下の書類により、合法性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 ①登録木材関連事業者の場合は、クリーンウッド法に基づく合法性の確認ができたことを証明する合法証明書類（作成中）
- ②登録木材関連事業者ではないが、合法木材ガイドラインにより合法性証明を行う事業者の場合は、合法木材ガイドラインに基づく合法証明書類（添付3）
- ③登録木材関連事業者ではなく、合法性証明ガイドラインによる合法性証明を行わない事業者の場合は、合法性の確認に用いた全ての資料（添付1～4など）